

형사 4주차

■ 형사절차와 인권 — 4주차: 수사절차 요약노트

▣ I. 수사의 개념

구분	내용
정의	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, 범인 및 증거를 발견·수집·보전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 준비를 하는 일련의 활동
목적	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
개시 요건	'혐의'는 추측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어야 하며,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건은 수사 불가

▣ II. 입건전 조사(내사)와 수사

구분	입건전 조사(내사)	입건(정식 수사)
의미	정식 수사 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	범죄 혐의 인정 시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등록
조사 대상	피의자 아님 → 피혐의자(용의자, 피진정인 등)	피의자(형사소송법상 법적 신분)
권리 보장	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 제한	피의자 권리 전면 적용
인권 관련성	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소지 존재	

💡 **핵심 포인트:** 입건전 조사 시에도 적법절차 및 인권 존중 원칙 준수 (수사준칙 제16조③)

▣ III. 수사의 단서

수사 개시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'수사의 단서'라 함.

→ 고소, 고발, 자수, 신고, 진정, 언론보도, 불심검문, 현행범체포, 변사체 발견 등

1 개인의 신고에 의한 수사 개시

구분	내용	관련 법조문
고소(告訴)	피해자 또는 그 관계인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 요구	형소법 제223조(고소권자), 제224조(고소 제한) 💡 성폭력·가정폭력범죄는 예외 인정
고발(告發)	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 신고 및 처벌 요구	형소법 제234조 ① 누구든 범죄 있다고 사료 시 고발 가능 ②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 인지 시 고발 의무

📌 고소·고발 접수 → 즉시 입건 및 수사 개시

2 범인 자신의 행위에 의한 수사 개시

구분	내용	관련 법조문
자수(自首)	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신고	형법 제52조① — 자수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
자복(自服)	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고소를 부탁 (반의사불벌죄)	형법 제52조② — 자복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
자백(自白)	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술 (자발성 필요 X)	—

💡 구분 요약

👉 **자수**: 수사기관 대상, 자발성 필수

👉 **자복**: 피해자 대상

👉 **자백**: 조사 중 진술

3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수사 개시

유형	내용	근거
불심검문(不審檢問)	경찰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	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
	💡 경찰은 신분증 제시, 목적·이유 설명 의무	

유형	내용	근거
	● 동행은 거절 가능, 동행 시 6시간 초과 불가	
현행범체포	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 가능	형소법 제211조~212조
	💡 누구든지 현행범 체포 가능 (시민도 포함)	
변사체 발견	범죄 연관성 의심 시 검시·부검 통해 정식 수사로 전환	국과수 부검·검사 지휘 필요

💡 역사적 참고: 조선시대 무원록도 같은 목적(실체적 진실 발견)을 위해 사용됨.

IV. 수사 개시의 법적 근거

법령	핵심 내용
형사소송법 제195~197조	검사·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 시 범인, 사실, 증거 수사 가능
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 제16조	수사 착수 시점: 피의자신문, 체포, 영장 청구 등 입건은 즉시 해야 함
수사준칙 제10조 (임의수사 우선 원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◆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◆ 피의자·가족의 인격·명예 보호
수사준칙 제21조 (심야조사 제한)	오후 9시~오전 6시 조사 금지
수사준칙 제22조 (장시간 조사 제한)	총 12시간 초과 금지 /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이하 /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

💡 핵심: 임의수사 원칙,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 의무

V. 요약 정리: 수사 개시 경로

구분	수사개시 단서	인권보호 관점
개인신고	고소·고발 → 즉시 입건	고소권 남용 시 피의자 명예 침해 주의
범인 행위	자수·자복	자발성·자의성 중요
기관인지	불심검문·현행범·변사체	적법절차·과잉검문 금지
입건전 조사	혐의 유무 확인	피의자 아님 → 변호인권 미보장

시험 포인트 정리

예상 문제	핵심 답안 포인트
① 수사의 의미	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일련의 절차
② 입건전 조사와 수사의 차이	피의자 신분 여부·권리 보장의 차이
③ 고소와 고발의 차이	고소는 피해자, 고발은 제3자
④ 자수·자복·자백 구분	자수(수사기관), 자복(피해자), 자백(조사 중 진술)
⑤ 불심검문 정의	경찰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질문행위, 6시간 제한
⑥ 현행법과 준현행법	범행 중·직후 + 4가지 경우 (추적, 장물, 훈적, 도주 시)

법 조문 핵심 요약

- 형소법 제223조: 고소권자 = 피해자
- 형소법 제234조: 누구든 범죄 있다고 사료 시 고발 가능
- 형법 제52조: 자수·자복 시 형 감경 또는 면제
- 형소법 제211~212조: 현행법체포 규정
- 수사준칙 제10·16·21·22조: 임의수사·심야조사·장시간 조사 제한

단답/서술형 대비 문제

1 수사란 무엇인가?

→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판단하여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 활동.

2 입건전 조사와 입건의 차이점은?

→ 입건전 조사는 혐의 확인 단계, 입건은 정식 형사사건 등록 단계 (피의자 신분 부여).

3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의무는?

→ 신분증 제시, 소속·성명·이유 설명, 동행 거부 가능, 6시간 초과 불가.

4 자수와 자복의 차이점은?

→ 자수: 수사기관 대상 / 자복: 피해자 대상.

5 현행법 체포의 요건은?

→ 범행 중이거나 직후, 또는 ①추적 중②장물소지③훈적④도주 시 중 하나.